

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2000. 2. 18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2000년 2월 10일 제출
- 회 부 : 2000년 2월 10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(법률 제6002호, 99.8.31 개정)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(대통령령 제16672호, 99.12.31 개정)이 개정되어 회의수당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며,
-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 (대통령령 제16691호, 2000.1.8) 됨에 따라 교육위원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하고,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함 (안 제1조 및 제3조)
-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을 인상함 (안 제6조, 제7조 및 별표 2)
 - 의정활동비 : 월 600,000원 → 월 900,000원
 - 회기수당 : 일 60,000원 → 일 80,000원
 - 국외여비 :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, 숙박비를 10% 인상함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○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,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하고 의정활동비, 회기수당,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을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